

제327회 시의회 정례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

일부 개정 조례안

검 토 의 견 서

2024. 11. 26.(화)

미 래 한 강 본 부

-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.
-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69호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, 내용상 이견은 없으나,
- 관계 법령인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와의 용어 통일성,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.
 - 제1조(목적)의 “생태환경 개선”은 “생태환경 보전”으로,
 - 제5조(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) 제2항의 “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”는 “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,
 - 제10조(한강공원 백서) 제2항 제1호는 개정안 제2호 내용까지 포함하여 “한강 자연생태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및 시책 집행효과에 관한 사항”으로, 제2호는 “한강 프로그램·행사 등 이용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